제417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임시회)

국회사무처

- 일 시 2024년8월21일(수)
-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 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상정된 안건

-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2

3. 4	C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٥	µ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٥	µ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2
5.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cdots 2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	2200377)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3
9. 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3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3
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3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3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 3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 5.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 **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4건의 법률안은 원 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7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 스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금 감면 사항 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방법 등은 하위법 령에 위임하며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 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 이재관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였으며,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의 전출 대상인 소부장 특별

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 이후 법률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법체계에 맞게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혹시 우리 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소위에서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고 또 도시가스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꿈으로써 부 작용도 최소화하기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법체계나 복지체계 이런 부분과의 정합성 또 이런 유사 사안이 생겼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전기사업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사 사안에서 또다시 이런 법률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나 전기가 완전한 의미 의 공공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도로 라든지 고속도로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감면해 줘야 되지 않 느냐라는 법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복지체계 전체와 연관성, 정합 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스공사가 지금 이렇게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스공사는 13조 원가량의 미수금이 지금 적자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감면해 준 것을 가스요금 인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작정 반영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걸 무조건 반영을 해서 올렸을 때, LNG 가격 수입과 연동돼 갖고 안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됐거든요. 그리고 요금 올리는 부분도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승인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가스공사의 적자를 계속해서 높이는—전기사업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해 주고 재정을 투입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아예 감면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해서 그걸 요금 지급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하나 통과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이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와 앞으로도 이런 전기사업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형수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복지정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복지전달체계와의 이런 정합성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아 위원 장관님, 어제 법안소위 관련된 내용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김동아 위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대안이나 수정안 없이 반대하셨는데 그 입장이 맞는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기사업법 6조에 보편적 공급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까지 저희가 취약계층 지원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어제 법안소위에서 나온 내용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대 이유를 보면 요금제도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가 시행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 ○**김동아 위원** 또 그 외에도 어제 최남호 차관님께서 요금 감면 규정 때문에 한전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 ○김동아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관보다 지금 법률 규정이 축소되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맞는 입장이십니까?

한 축에서는 지금 적자가 늘어난다고, 한 축에서는 요금 감면 제도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소통에 오해 가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 ○**김동아 위원** 소통에 오해가 아니라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이번 8월 16일부터 취약계층, 우리가 기후민감계

층이라고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기요금 지원,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1만 5000원 늘려서……

-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 말고 지금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게 해서 지금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폭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 마 그 콘텍스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아 위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셨어요. 그 취지는 공감하고 가스공사와 민간 도시가스사의 법상 요금 경감 부담을 지우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지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또찬성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에너지 복지 차원의 법규를 정비해 주셔서 도시가스 부분도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금의 체계가 지금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체계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법체계가 마련이 되고 미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걸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전기요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한전은 정부 재원을 지원해서 요금 감면을 지원 안 하겠다라고 반대를 하셨는데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금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거,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거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어제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보셨겠지만 정부 재정 지원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 ○김동아 위원 도시가스사업자에 들어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요,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확인을 다시 한번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정 지 원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 ○김동아 위원 제가 정부 의견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또한 상장사인 가스공사와 민간 도시가스사에 법상 요금 경감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수반될 필요'이게 정부 공식 의견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조항에서는.
- ○김동아 위원 한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지만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어제 법안소위 논의에서 논의하고 나서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 ○김동아 위원 논의하고 나서 빠졌나요?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부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한전에는 반대했으면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인정한 이유는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렸지만 재정 지원 부분은 빠져 있고요. 기본적인

요금체계 자체가……

○김동아 위원 법상에서 빠졌다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정부 의견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요금체계 자체가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체계 자체 가 완전히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요금체계를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한전은 요금을 지원 안 하겠다고 하지만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뭐냐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둘 다 뺐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법안소위 논의 를 했던 우리 차관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현장에 참석했던 최남호 차관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어제 저희가 분명히 초안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소위 과정에서 정부 입장으로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급비용에 반영해서 요금 인상에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은 저희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서 최종안에서 정부 재정 지원 조항이 빠져 있는 것으로 되었고요.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사업법에서 저희가 동일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기사업법에는 6조에 기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가스법은 기본적으로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의무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변경을 요청해서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 저희들도 어제 그것 문제 제기를 했었고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제가 정리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차관님 답변과 함께.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는 이번에 법령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별도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하고 보류됐는데 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이거를 넣느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사업법에는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보편적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을 만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거는 근거 조항을 만들자 이런 것이었고.

지금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시가스에서 요금체계를 이번에 감면 등을 해 주면 그 사업자가 줄어든 사업 비용을 그다음 연도의 요금체계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조항을 빼는 것으로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형수 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 이런 부분들에서,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됐고.

또 하나, 어제 도시가스사업에 들어간 것은 직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감면 조

항 등은 고시 등이나 약관 등에 할 때는 취약계층이 신청할 때 주게 돼 있는데 김원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란이 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고 이를 '직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업자 대신에'로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형수 위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요금체계에 복지전달체계를 자꾸 믹성해 가지고 법령에 넣는 거니 이게 맞는 저기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논란이 있어서 그거에 어제 저도 좀 더 숙의 기간을 가졌으면 했습니다만 김원이 의원님께서 이번에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고 오늘 박형수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더하면 정부가 이번에 전기사업법이나 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전달체계와 요금체계를 혼용하는 데서 어떤 부분에서는 법령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의를 하는 것처럼 됐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동의하는 것처럼 되니까 저희들도 어제 혼란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 복지전달체계와 법에 요금 등에서 이렇게 병합하는 문제 등에 앞으로 여러 요건들이, 여러 요구들이 나올 텐데좀 더 정부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박형수 위원님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충 이제 아마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끝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는지요?

안 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문제입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론으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및 제12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제11항 및 제16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 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대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용 제고를 통한 내수 진작, 전통시장 화재 등 재해 안전망 구축 지원 등 금번 의결되는 법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허청 소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교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 의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이언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선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지요.

○이언주 위원 선거 얘기는 아니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안 얘기는 아니지만 긴급한 사안이라서……

티메프 관련해서 지금 긴급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증료까지 합하면 6%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 놀이 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에서 관계 당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이자는 다시 아주 저리로 바꾸든지…… 최소한 이것은 정부 당국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말씀 감사하고요. 중기부에서 의견을 청취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 ○**위원장 이철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 ○**허성무 위원** 아니, 위원장님!
- ○김종민 위원 지금 손을 여러 번 들었는데……
-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 ○**김종민 위원** 이왕 장관님들 뵌 김에 한 가지 확인하고 좀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엊그제 우리 중기소위에서 법률안 심사하면서 쟁점이 됐던 게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지원법이었는데 기재부도 중기부도 다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게 기존 법률이 있어서 전기요금 지원의 신설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따로 우리 소위에서 따지기로 하고.

일단 지금 있는 기존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현황을 보니까지금 총 176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8월 지금 현재 지원 현황이 43만 5000명이에요, 870억. 전체 2500억 중에 870억, 43만 명, 24.7%, 4분의 1밖에 지금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부에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냐?' 그랬더니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된 것 같대요. 그러니까 법안의 쟁점은 그것대로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이 특별지원 제도조차도 이렇게 중기부가 좀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 아닌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전기료 지급을 위해서는 우리 중기부의 지방청뿐만 아니라 외식협회라든지 여러 관련된 협단체를 위해서도 공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만 지급되는 부분과 함께 저희가계속해서 문자나 메시지를……
-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개요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문자나 메시지 등을 저희가 보내는 데 있어서 일부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홍보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있도록 지금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종민 위원 일단 이것 논쟁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연 말까지…… 이것 불용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아깝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얼마나 실패입 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지난번 상임위에서 팁스(TIPS) 운영기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유관기관화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서의 실무자들께 저희의원실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로드맵으로 빨리 진행할 거냐 계속 답변을 요구했는데 현재 그냥 아무 내용, 진척이 없습니다.

벌써 내년도 팁스 예산도 편성이 다 되어 있을 거고 기재부를 통해서 여기 넘어올 텐데 적어도 내년도 예산만이라도 유관기관화되고 난 다음에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로드맵으로 빨리 유관기관화할 건지 이것을 좀 제대로, 빨리 알려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저희가 지금 중기부 내에 TF를 설치를 해서 관련되어 있는 팁스 전반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가 정리된 내용들을 의원실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제가……
-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박지혜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호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인데요. 네 분의 말씀만 듣고……

네 분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법안 의결인데요 현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니까 네 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발언이니까 정진욱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고요. 김종민 위원님이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잠깐 말씀……

전기차 포비아가 지금 상당히 큰 민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당정 협의를 보니까지금 화재 예방 충전기 9만 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화재 예방 충전기라는 게 과학적으로 화재 예방이 확실히 됩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화재 예방 충전기 문제는 소관 부처인······
- ○김종민 위원 아니, 그것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나 검토를 거친 거예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직까지 소관 부처가 환경부라서 저희가 깊이 관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아직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정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9 만 대를……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되게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될 사안, 이것 포비아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과학적·기술적 접근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 ○김종민 위원 이게 행정적·정무적 접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안심시킨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정부를 칭찬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가 없이 자꾸 시끄러우니까 '우리 대응하고 있다' 이런 알리바이용으로 만약에 그런 발표를 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단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이 친환경자동차 주무장관이잖아요. 주무장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 근거에 의해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게 이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상황을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범부처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진욱 위원 중기부장관님, 티메프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됐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지금 금감원을 통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 ○정진욱 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상황에서와 관련된 집계액들하고 8월까지 정산 달려 오는 것까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저희가 본 것으로는 한 890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뒤로도 정산을 8~9월까지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욱 위원 사실은 그 집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7월 25일에 발표할 때 2100억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문한 상황을 파악해 보면 사실 쉽게 집계할 수 있는 건데 2100억 프레임을 그때 던지는 것 보면서 참 성의 없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했던 부분들은 이걸 티메프를 통해서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다는 의도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9월 정산액까지를 저희가 보고 또 판매자들의 8~9월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관련돼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진욱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하겠다…… 5700억이었던가요,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 ○정진욱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4% 또 3.5%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자율과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자율 관련 부분들은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고 또 제가 만났던 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피해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처음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유사한 사태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원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사 사태와의 형평성 때문에서라도 이 이자율을 처음으로 공고를 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시고 또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당정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내의 재정 당국과 함께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어려움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티메프 사태는 사실은 그 전에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부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존의 관례나 기존의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요. 책임이 있으면 책임 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빚이 많이 있는 중소자영업자들, 판매업자에게 빚으로 다시 유지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3.5% 3.4%에 달하는 이자율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경영안정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이자율, 아까 이언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자율을 거의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피해를 받으신 판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전 부처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김원이 간사님은 자료 요구니까.

박지혜 위원님 그다음 마지막 김정호 위원님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혜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던 쟁점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기요금 할인과 관련해서요.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한전 같은 경우에 요금 할인하는 것을 별도의 계정으로 산출한 다음에 미수금 처리하는 게 한전은 안 되는 건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전은 그냥 그게 바로 적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가스공 사는 미수금이라고 하는……
-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 ○박지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그 미수금 방식이라는 것이 사실 가스공사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라서 그것을 지금 한전에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체계가 오랫동안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하루아침에 이걸 다 털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조금씩 개편하는 작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좀 충실하게 협의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취약계층, 앞으로 기후위기, 폭염, 혹한 이런 게 심해지니까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게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을 기존처럼 요금 감면을 하고 이것을 한전의 적자로 떠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요금 감면을 하지 않고 에너지바우처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차관님은 에너지바우처로 다 처리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방식이 앞으로 맞고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실에 종합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를 산업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 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 또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분야별로 막 산만하게 나눠져 있으면 체계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 슴 깊이 새기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정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안덕근 장관님, 지난번 현안질의의 답변서를 못 받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의구심, 시간이 짧아서 그냥 질문만 죽 나열하고 서면답변을 추후에 해 달라고 했는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보통 서면이 일주일 내에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안 왔고, 말만 답변하겠다 하지 말고 실제로 실행하시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자료 제출 요청드린 게 체코 측의 입찰 공모 시입찰제안서, 그러면 응찰하는 업체들의 과업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이 내용을……이것은 우리가 제출한 게 아니고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공개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체코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고 공개가 돼 있는 사항 같으면 바로 저희가……
- ○**김정호 위원**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인데 이것을 그 대상국하고만 얘기를 합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다 떠 있는 거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일반 대중한테 공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래서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 의원님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우리 측의 입찰신청서, 우리 영업비밀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달라 한 게 아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공개된 입찰제안서이기 때문에 그것 뭐 검토 여지 없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이게 기술 사양……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술 사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안보 사항이라든가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일반 대중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끝내고요.

권향엽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하시고요. 오늘 김원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권향엽 위원님한테 드렸으면 좋겠는데……

박형수 위원님,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형수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 좋은 대책으로 만들어서 산업부는 위원님들께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이 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안질의 할 때 논란이 됐었던 게 대왕고래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김원이 위원 동해안 석유·가스전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시기로 했던 자료들도 꽤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입찰 안내서, 국내 자문 의견서, 계약서 등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보고됐던 자료, 지시 사항, 대통령의 지시 사항 이런 것 왜 공개를 못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 그리고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그리고 해외자문단 자문 결과, 정보공개포털에 이미 공개됐다가 비공개 처리된 이런 자료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전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기밀이다 혹은 자원안보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기실은 외국투자 끌어들이려고 외국계 자본들한테 자료 주잖아요, 검토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은 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못 보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로 1000억인가, 석유공사에서 1000억 이상인가 100억 이상인가 투자할 때는 투자심의 위원들의 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 ○김원이 위원 그 투자 심사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거기에 세 분인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섯 분 중에 세 분인가가 외부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면 그 외부 심사위원도 그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러저러한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들, 외국계 기업들, 투자를 받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들 또 투자 심사를 하는

외부 투자심사 위원들은 다 보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못 본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하게 얘기 좀, 질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철규 정부에서 공개됐다가 비공개 처리한 것 있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게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아, 개인정보 같은 것.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공개된 자료라면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이 위원 그것 아닌데요. 자문서하고 여러 가지가 공개됐다가 비공개 처리된 게 있어요. 예전에는 공개 공개였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료들이 있어요.
- ○위원장 이철규 그리고 입찰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의 공개지 그 입찰서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정부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원만하게 우리 민생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들 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입법화됨으로써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김완기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전문위원과 행정실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승규 고동진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출장 위원(3인)

김성원 김한규 주호영

○청가 위원(2인)

박상웅 서왕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특허청

청장 김완기